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1. . . (제 회)	

지역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학령인구 감소 및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 등으로 지방대학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음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올해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지역인재의 지방대 입학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지방대학 의·약·간호계열 및 전문대학원의 지역인재 선발 의무화를 추진한 바 있음. 이에, 법률에서 위임한 지역인재 선발 비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또한 정부는 동 법에 근거하여 지방대학 육성지원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대학 육성에 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를 운영 중에 있음. 동 위원회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위촉 위원에 대한 연임제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지역인재 요건, 지역인재 선발 비율, 지원 내용 규정(안 제10조)

법률에서 위임한 지방대학 의·약·간호계열 지역인재 요건을 구체화, 지방대학 의·약·간호계열 및 전문대학원의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규정하고 시행령상 선발 비율을 상회하는 지방대학에 대한 지원 내용을 구체화하여 규정

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 연임제한 규정 마련(안 제6조)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 위촉 위원에 대한 연임제한
규정을 신설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예정
3) 규제심사 예정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본문 중 “한다”를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한다.
제10조를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6항 외의 부분) 중 “법 제15조제4항”을 “법 제15조제6항”으로, “모집”을 “입학”으로 한다.

① 법 제15조제2항 본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를 의미한다.

1.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한 중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입학부터 졸업까지를 의미한다)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2. 해당 지방대학이 소재하는 지역의 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입학부터 졸업까지를 의미한다)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
3. 본인 및 부모 모두가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학교의 재학기간 내 해당 학교가 소재한 지역에 거주한 자

② 교육부장관은 지방대학의 장이 별표의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학생 선발 비율을 상회하여 선발하는 경우 관련 재정사업 평가 및 기관 평

가 등에 있어서 우대하거나 우대하도록 관련 행정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별표 제목 중 “학생 모집 비율”을 “학생 입학 비율”로 한다.

별표 제1호 중 “학생 모집 비율”을 각각 “학생 입학 비율”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지방대학

해당 지역	범위	학생 입학 비율
1) 충청권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40%
2) 호남권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40%
3) 대구·경북권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40%
4) 부산·울산·경남권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40%
5) 강원권	강원도	20%
6) 제주권	제주특별자치도	20%

나. 지방대학 한약학과

해당 지역	범위	학생 입학 비율
비수도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아닌 지역	40%

별표 제2호 중 “학생 모집 비율”을 각각 “학생 입학 비율”로 하고 같은 호 가목에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의 3(학위과정의 통합)에 따른 선발하는 학석사통합과정 입학인원의 경우 1호 나목에 따른다.” 단서를 신설하고 나목에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의3(학위과정의 통합)에 따른 선발하는 학석사통합과정 입학인원의 경우 1호 가목에 따른다.” 단서를 신설한다.

별표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지역 저소득층등의 학생 입학 비율

모집단위별 전체 입학인원	모집단위별 지역 저소득층등 최소 선발인원
50명 이하	1명
50명 초과 100명 이하	2명
100명 초과 150명 이하	3명
150명 초과 200명 이하	4명
200명 초과	5명

별표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각 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4. 제1호 및 제2호의 학생 입학비율은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계산한다.

가. 제1호의 입학 비율 = $\frac{\text{모집단위별 입학자 중 법 제15조제2항의 각 호 요건을 충족한 인원}}{\text{모집단위별 전체 입학인원}}$

나. 제2호의 입학 비율 = $\frac{\text{전문대학원 입학자 중 해당 지역의 지방대학을 졸업한 인원}}{\text{전문대학원 전체 입학인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대학 지역인재 선발 요건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제1,2,3호 개정규정은 2023학년도 대학입학전형부터 적용하고, 별표 제4호의 가 목 개정 규정은 2022학년도에 중학교에 입학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② (생 략) ③ 법 제9조제2항제2호 또는 제 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 는 2년으로 <u>한다</u> . 다만, 위원이 결위된 경우 그 보궐위원의 임 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 으로 한다. ④ ~ ⑦ (생 략)	제6조(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 ----- ----- 하고, 한 차례만 연 임할 수 있다. ----- ----- -----.
제10조(대학의 입학기회 확대) <u><신 설></u>	제10조(대학의 입학기회 확대) ① <u>법 제15조제2항 본문의 “대통령</u> <u>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 음</u> <u>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u> <u>람”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u> <u>모두 충족한 경우를 의미한다.</u> 1. <u>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u> <u>한 중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입</u> <u>학부터 졸업까지를 의미한다)을</u> <u>이수하고 졸업한 자</u> 2 <u>해당 지방대학이 소재하는</u> <u>지역의 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u> <u>정(입학부터 졸업까지를 의미한</u> <u>다)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u> <u>자</u>

<u><신 설></u> <u>법 제15조제4항</u>에 따른 해당 지역의 범위와 학생 <u>모집</u> 비율은 별표와 같다.	<u>3. 본인 및 부모 모두가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학교의 재학기간 내 해당 학교가 소재한 지역에 거주한 자</u> <u>② 교육부장관은 지방대학의 장이 별표의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학생 선발 비율을 상회하여 선발하는 경우 관련 재정사업 평가 및 기관 평가 등에 있어서 우대하거나 우대하도록 관련 행정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u> <u>③ 법 제15조제6항</u>----- ----- ----- <u>입학</u> ----- -----.
---	--

[별표]

해당 지역의 범위 및 학생 입학 비율(제10조 관련)

1. 지방대학(법 제15조제1항·제2항에 따른 해당 지역의 범위 및 학생 입학 비율)
가. 지방대학

해당 지역	범위	학생 입학 비율
1) 충청권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40%
2) 호남권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40%
3) 대구·경북권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40%
4) 부산·울산·경남권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40%
5) 강원권	강원도	20%
6) 제주권	제주특별자치도	20%

나. 지방대학 한약학과

해당 지역	범위	학생 입학 비율
비수도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아닌 지역	40%

2. 지방 소재 전문대학원(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해당지역의 범위 및 학생 입학 비율)
가. 한의학전문대학원

해당 지역	범위	학생 입학 비율
비수도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아닌 지역	20%

※ 고등교육법 제29조의3(학위과정의 통합)에 따른 학석사통합과정 입학인원의 경우 1호 나목에 따른다.

나. 법학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해당 지역	범위	학생 입학 비율
1) 충청권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20%
2) 호남권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20%
3) 대구·경북권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20%
4) 부산·울산·경남권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20%
5) 강원권	강원도	10%
6) 제주권	제주특별자치도	10%

※ 고등교육법 제29조의3(학위과정의 통합)에 따른 학석사통합과정 입학인원의 경우 1호 가목에 따른다.

3.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지역 저소득층등의 학생 입학 비율)

모집단위별 전체 입학인원	모집단위별 지역 저소득층등 최소 선발인원
50명 이하	1명
50명 초과 100명 이하	2명
100명 초과 150명 이하	3명
150명 초과 200명 이하	4명
200명 초과	5명

4. 제1호 및 제2호의 학생 입학비율은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계산한다.

가. 제1호의 입학 비율 = $\frac{\text{모집단위별 입학자 중 법 제15조제2항의 각 호 요건을 충족한 인원}}{\text{모집단위별 전체 입학 인원}}$

나. 제2호의 입학 비율 = $\frac{\text{전문대학원 입학자 중 해당 지역의 지방대학을 졸업한 인원}}{\text{전문대학원 전체 입학 인원}}$